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183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
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
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요구 및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여신청시 구비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
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(참조 :
청소행정과, ☎ 02-3396-5454, FAX : 02-3396-8754

E-mail : pye5190@junggu.seoul.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

[붙임 1-2]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대여신청시 구비서류) 중 “인감증명”을 “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